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2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소비기한 표시에 대하여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다목, 제4호가목4) 및 같은 호 다목3), 제5호나목 및 제6호나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Ⅱ. 개별기준의 4. 식품접객업의 가목1)가)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1)나) 중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를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규칙 별표 1 제5호”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4)·6), 같은 호 라목4)가), 같은 호 라목4)

나)(1)·(2) 및 같은 호 라목4)다)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4)파) 중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를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규칙 별표 1 제5호”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1)·5), 같은 호 나목1)가)·나) 및 같은 호 나목2)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가목1)다) 중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를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규칙 별표 1 제5호”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가목1)3), 같은 호 다목4)가)(1)·(2) 및 같은 호 다목4)나)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다목4)차) 중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를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규칙 별표 1 제5호”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2), 같은 호 나목2)가)(1)·(2) 및 같은 호 나목2)나)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Ⅰ 제14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1)나),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4)파), 같은 표 Ⅱ.개별기준 제3호가목1)다),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3호다목4)차)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4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5조제2호,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유류를 말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3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7제1호다목, 별표 9 Ⅱ. 제7호가목 및 나목,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

호ㆍ제3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ㆍ마목ㆍ사목ㆍ버목 각 호 외의 부분ㆍ버목3)ㆍ터목 단서, 제4호라목, 별표 9 제3호다목5) 본문 및 같은 목 7), 별표 13 Ⅱ. 제3호나목2)ㆍ4), 별표 14 제3호나목,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제5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호다목,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제95조제1항 후단, 제98조제1호, 별표 1 제7호, 별표 17 제1호다목·타목, 별표 17 제2호바목, 별표 17 제3호자목, 별표 17 제4호가목, 별표 17 제5호마목, 별표 17 제7호카목, 별표 17 제8호라목·사목, 별표 22 제2호나목,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나) 및 같은 호 나목5)가)·나), 별표 27 제1호아목,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별표 23 Ⅰ. 제17호를 삭제한다.

④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6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제51조의3제1항1호·제3호, 제51조의11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바목, 제51조의11제2항, 제51조의13제1항제2호 아목, 제51조의13제2항, 별표 2의4 제6호, 별표 8 제1호가목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8호나목1)마),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 거목5) 및 제15호버목,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제13호사목, 별표 12 제1호차목, 별표 12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별표 12 제4호카목(3),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별표 14의4 제2호나목,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33호의4서식, 별지 제33호의7서식, 별지 제36호의2 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회수·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3. (생 략)	제15조(회수·폐기처분 등의 기준) ----------. 1. (현행과 같음) 2. ---------- 소비기한---------- 3. (현행과 같음)